

-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무상양여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현행 100%에서 80%이하로 인하해 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각 시도에 권고해 옴에 따라, 시가 동조례를 개정하여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건교부가 제시한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시의 재정여건·국고지원액·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가능액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매각대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례개정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최초로 고시되는 사업지구와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지구가 확대되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지구의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한하고 있어, 이미 사업을 완료(22개 지구)한 지구는 차치하고, 입법예고시 의견수렴결과 제기되었듯이 사업시행중인 지구(67개 지구)로서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였거나 분납 중인 토지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의 재정여건,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관할 지자체에서 검토처리), 시 법률고문의 자문결과(소급적용하여 환불할 의무없음), 형평성시비 우려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기타 다른 조문의 개정은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당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구성 안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 목의 시설에”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로 한다.

제26조중 “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를 “제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31조중 “당해 토지에 연고를 가지고”를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 금액에서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매각가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최초 고시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가 확대되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지구의 추가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64
----------	-----

2001년 6월 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5월 7일

<p>다. 상정일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1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p>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장 입지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인 사업장의 도로연접 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량출입에 필요한 전시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매업자에게 1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매매업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도록 하고, 보증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자체없이 재가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2). ○ 기존에 등록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금을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확보하도록 유예기간을 둠(안 부칙 제2조).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p>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5.4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4호로 2001. 5. 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p>○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등 사업장 입지 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p> <p>□주요 조문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제1항제2호중 “사업장”을 “자동차전시용 시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존 규제심사 차원에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매매업 사업장 입지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 개선토록 한 심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코자 하는 등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음은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 등)의 신설에 대한 의견 동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4조의2제1항 매매업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였음.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하자보증금을 확보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하자보증금 의무적 예치규정이 '99. 12. 31 동 규칙개정시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 업무지침 <건설교통부 장관 91150-259(2000. 4. 6)호>에 따른 것이므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되나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단서규정에서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하자보증금(1천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1
----------	-----

2001년 6월 일
교통 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3조).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1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 건물(20세대이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2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3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4

○ 부담금은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아 허용할 수 있음(안 제6조).

- 납부 회수는 2회로 함.

-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함.

-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함.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안 제7조).

-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2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세 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수입금,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 세 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 광역교통계획·추진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